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6. 10. 14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10. 9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10. 9
- 라. 상정일자 : 1996. 10. 1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호)

가. 제 안 이 유

- 서산시 상수도사업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 요 골 자

-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것임 (제4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화하여 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04 호
의결년월일	1996. . . (제 호)

서산시장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년월일	1996. 10. 9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96. 10. P.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서산시 상수도사업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장) ①사립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u>지방행정사무관</u>으로 보한다.</p>	<p>제4조(소장) ① -----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u> -----.</p>

●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1995. 1. 4)
(조례 제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서산시 수석동 산 95-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정수장시설의 유지·관리
2.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3. 정수의 가압·송수와 급수
4. 가압·송수에 대한 조사 시험
5.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
6. 정수장 및 배수지의 경비
7. 전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8. 기타 사무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大統領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消防機關·教育訓練機關·保健診療機關·試驗研究機關 및 中小企業指導機關등을 直屬機關으로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② 削除 <94·12·20>

第105條 (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103條第1項의 定員範圍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第106條 (出張所) 地方自治團體는 遠隔地 住民의 편의와 特定地域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出張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107條 (合議制行政機關)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議制行政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4節 下部行政機關

第108條 (下部行政機關의 長) 自治區가 아닌 區에 區廳長, 邑에 邑長, 面に 面長, 洞에 洞長을 둔다. 이 경우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第109條 (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①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이 任命한다.

② 邑長·面長·洞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任命한다. <改正 94·3·16>

③ 削除 <94·3·16>

第110條 (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市長의, 邑長·面長은 市長 또는 郡守의, 洞長은 市長(區가 없는 市의 市長을 말한다)

충 청 남 도

우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전화 (042) 251-2224 / 전송 255-9104

문서번호 행정 12200 - 1853
 시행일자 1996. 09. 23 (성구)

수신 서 산 시 장
 참조 총 무 과 장

선결	과장	116	지				
접	일자	96.9.23	시	시	총		
	시간	10:30	결	부	총		
수	번호	32090	재	국	총		
			공	과	장		
처리과			람	계	장		
담당자				장			

제목 서산시 상수도사업소장 직렬 조정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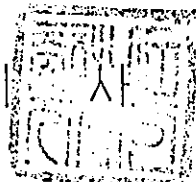
관련처처법규개정후사항

1. 서산시 총무 12200 - 1846 (96. 9. 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장 직렬조정 승인 신청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니 관련 규칙개정등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 부 : 정원승인서 1부. 끝.

충 청 남 도 지



定員承認書

기관명	직명	직급	정원	비고
서산시 상수도 사업소	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계		0명	

※ 정원시행일 : 1996년 10월 1일

이 하 여 백